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 이후 논의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한국에어로테크(안영호) ② (주)한화건설(최광호)  
③ (주)서영엔지니어링(김종훈)

나. 전화번호 : ① 02-2025-3113 ② 02-2055-5404 ③ 02-6915-7296

2. 명칭 : 친환경 모듈화 부재를 이용한 조절형 버팀보 구조의 가설 흠막이 시공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흠막이공

<기술의 요지>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시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흠막이 공법으로서, 부재의 근입은 최소로 하며 천공 및 향타를 위한 대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레일(Rail) 및 판넬(Panel) 등의 가시설 자재 조립 후 압입시키고 그 내부를 소규모 굴착장비(굴삭기)만으로 굴착하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법

<범위>

모듈화 부재 및 조절형 버팀보 구조를 이용하여 가시설 자재를 조립 후, 소형 굴착장비(굴삭기)로 내부를 굴착하면서 압입하는 기계화 시공 공법으로 굴착깊이 10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에 적합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55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1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